

1. 투고 및 게재 관련 규정

- 1) 본 학술지의 기고자는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논문기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2) “한국사회정책학회”에 투고 또는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 또는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은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2020. 11. 21. 부분수정)
- 3) 학회지의 원고는 사회정책과 관련한 경험연구, 이론 연구, 개관연구를 포함한다. 아울러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주제(예: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세미나, 학술대회 등)를 가지고 특집을 꾸밀 수 있다. 학회지의 특집은 편집위원회 주관 하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특집 원고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하여 편집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주도로 특집원고의 편집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15. 3. 3. 신설)
- 4) 학회지의 발간 횟수는 연 4회로 하며, 발간일은 매년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로 한다. 논문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투고마감일은 1월15일, 4월15일, 7월15일, 10월 15일이고 매 호마다 12 편 내외의 원고를 실는다. (2015. 8. 7. 부분수정)
- 5) 논문 투고는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JAMS)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9.08.19. 신설). 한국사회정책학회 JAMS 시스템 (<http://kasp.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제출한다. 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투고신청서, 연구윤리확약서, 워드프로세스(한글 3.0 이상)로 작성된 원고를 한국사회정책학회 편집위원회 이메일 (kaspeditor@daum.net)로 제출한다. 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6) 투고 시, 원고 심사료(10 만 원)를 학회 편집위원회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게재료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 (2015. 8. 7. 부분수정)
- 7) 제출된 원고는 3 명의 심사위원 중 2 명 이상의 게재 적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한국사회정책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로 이양된다. 게재확정된 논문은 KCI문헌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상세)를 제출해야 한다(<https://check.kci.go.kr>).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 8) 게재 원고의 페이지 수는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기본 25페이지로 하며, 최대 35페이지를 넘지 못한다. 기본게재료는 일반 논문 20만원, 연구비 지원 논문 30만원, 청년연구자 논문 10만원이며, 기본 25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1페이지 당 1만원씩 추가 부담해야 한다. 1) 청년연구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모두 충족 시). (가) 청년연구자 단독 연구 또는 청년연구자간 공동 연구, (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다) 게재확정 시점에 석사/박사과정생(수료생 포함), 또는 게재확정 시점이 석/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이고 게재확정 시점에 유급 소속이 없는 경우. (2020. 3. 27. 부분수정)

2. 논문심사원칙

- 1)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또는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연구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
- 3) 심사절차: 수시접수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한다.
- 4)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3인이 동시에 행하며, 판정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논문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 판정의 구체적 처리는 다음과 같다.
 - ① 게재: 게재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 ② 수정후게재: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추후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재발송하여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③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추후 저자가 수정한 논문을 3인의 심사위원에게 재발송하여 수정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확인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④ 게재불가: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4-1) 투고된 논문의 본심사판정기준은 [표1]과 같다. (2015. 3. 3. 신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판정기준
게재	게재	게재	게재가능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 4-2) “수정후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심은 본 심사위원 중 “수정후재심”판정을 한 심사위원에 한하여 실시한다. 재심은 “게재”와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재심 결과 최종 판정 기준은 원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본 규정 4-1)의 [표 1]을 적용한다. (2015. 3. 3. 신설)
- 5) 심사불복과 재심청구: 연구논문 제출자가 판정 내용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재심요청서 (학회 홈페이지-학술지-투고논문작성방법-논문심사원칙)와 함께 서면 이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재심 논문은 다음 호에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 6) 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제목, 연구목적, 내용의 일치성
 - ②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 ③ 연구내용이나 방법의 독창성
 - ④ 최근까지 연구 동향의 반영도
 - ⑤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 ⑥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
- 7) 심사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 8) 선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9)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3. 원고작성방법

- 1) 모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 ① 논문제목
 - ② 기고자의 국문 성명, 소속 (직위포함), E-mail 주소
 - ③ 국문요약(A4 기준, 1/2 매)
 - ④ 본문
 - ⑤ 참고문헌
 - ⑥ 영문요약 (A4 기준 25 행, 1/2 매): 논문제목, 기고자 성명, 소속기관의 영문명도 포함
- 2) 항목별 대소번호는 ‘3., 3), (3), ③, 다’의 순으로 한다.
- 3) 주(註)는 내각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부기할 내용만 각주를 사용한다. (홍길동, 1997: 112-114) (Duncan, 1969: 15). 저자가 4 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양인의 경우 “○○○ 외”로, 서양인의 경우는 공저 1 인 이름 다음에 “et al.”을 쓴다.
- 4)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로 표시, 표와 그림 하단에 “자료: ”라고 쓴 다음 출처를 밝히며, 그 형식은 참고문헌을 따른다. 그림은 원본과 파일과 함께 우송하여야 한다.

4. 본문작성방법

- 1) 한글 2007을 기준으로 함.

2) 문단모양

	본문	각주
왼쪽여백	0	4
오른여백	0	0
들여쓰기	18	0
내어쓰기	0	5.8
줄 간 격	180	110
문 단 위	%0	%0
문단아래	0	0
날말간격	-2	-1
정렬방식	혼합	혼합

3) 용지설정

위 쪽	27
아래쪽	20
안 쪽	32
바깥쪽	25
머리말	0
꼬리말	12
제 본	0

※본문크기는188×256 mm가 됨.

4) 글씨크기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논문제목	신명	21	100	0
소제목	신명	17	100	0
국문요약	신명	9.5	100	-2
영문요약	신명	10.5	100	-1
본 문	신명	10.5	100	-5
각 주	신명	8	100	0
표, 그림제목	신명	8.5	100	0
표 내용	신명	8.5	100	-3
표의 주	신명	8	100	0
참고문헌	신명	9	100	-4

5. 참고문헌 작성방법

1) 전체적인 원칙

- (1) 참고문헌은 국문,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한자 사용권) 문헌부터 가나다순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영문 등 알파벳으로 표시된 저자의 문헌을 제시한다.
- (2)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어로 된 이름은 성(surname)을 먼저 표기하고, 이름은 첫 글자(initial)만 표기한다.
- (3)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책이름, 출판지역 및 출판사 순서로 쓴다.
- (4) 같은 저자의 저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출판년도순으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쓰인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출판된 연도 뒤에 a, b, c 를 첨가하며 (예: 1990a, 1990b, 1990c) 이 때 맨 앞의 저자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밑줄로 대체한다.
- (5) 국문 참고문헌 작성 시, 단행본의 책명은 고딕체(Gothic)로 하되, 정기간행물은 권 (Volume)과 호(Number)만 이탤릭체로 한다.
- (6)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단행본의 책명은 이탤릭체(Italic)로 하며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정기간행물의 책명 또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되, 권(Volume)과 호(Number)만 이탤릭체로 한다.
- (7) 영문 참고문헌 작성 시, 저자, 출판지역 및 출판사는 각 단어의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며 출판지역은 잘 알려진 도시는 도시명만,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는 도시명과 주(또는 국가) 이름을 같이 표기한다.

2) 단행본

(1) 저자가 1 인인 경우

예: 김병철 (2009). *메타평가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예: 김연명 (2002).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김연명(편).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서울: 인간과 복지.

예: Chelimsky, E. (1985). *Program evaluation: Patterns and directions*. Washington, DC: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2) 저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되,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에서는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ampersand) 기호를 넣는다.

예: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양시현, 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예: Smeeding, T., Rainwater, L., Rein, M., Hauser, R. & Schaber, G. (1990). Income poverty in seven countries: Initial estimates from the LIS database. In T. Smeeding, M. O'Higgins & L. Rainwater(eds). *Poverty, inequali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3) 편집한 서적

예: 이정환, 남주성 (편)(1996). *질적 연구의 이해*. 서울: 미래출판사.

예: Schubert, W. & Ayers, W. (eds). (1992). *Minimal brain dysfunction in children*. New York: Longman.

(4) 재판(再版) 이상인 경우

예: 이준구, 이창용 (2005). 경제학원론(제 3 판). 서울: 법문사.

예: Levine, D. & Havighurst, R. (1995). *Society and education* (8th ed.). Boston: Allyn and Bacon.

(5) 번역서(한글 제목과 원제목, 번역 연도와 원 발행연도 제시)

예: 양옥경(역) (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Walsh, F. (1998). *Family and resilience*. 서울: 나남.

(6) 저자 또는 편집자가 없는 경우

예: 행정안전부(200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서울: 행정안전부.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Phoenix, AZ: Rhode Publishing Press.

3) 정기간행물

(1) 정기 학술지에 나온 논문인 경우

① 논문과 학술지명 본문과 동일한 글씨체로 하며, 권(Volume)과 호(Number)만 이탤릭체로 한다.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논문은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를 쓴 후 모두 소문자로 쓰며, 학술지 명칭은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쓴다.

② 저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표기하되, 영문으로 된 참고문헌에서는 가장 마지막 저자 앞에 &(ampersand) 기호를 넣는다.

③ 쪽의 범위를 나타낼 때에는 쪽을 나타내는 기호인 pp.를 쓰지 않는다.

예: 석재은 (2002).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 50. 235-264.

예: She, P. & Livermore, G. (2009). Long-term poverty and disability among working-age adult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9(4). 244-256.

예: Clap, J., Nanda, A. & Ross, S. (2008). Which school attitudes matter? : The influence of school district performance and demographic composition on property valu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63(2). 451-466.

(2) 비학술지(잡지)에 실린 기고문, 논평, 논설, 칼럼, 기사(記事)인 경우: 기고자(寄稿者)가 나타나 있는 경우는 기고자를 먼저 밝히고, 기고자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고문 제목을 먼저 쓴다.

예: 이태수, 윤홍식 (2014). 한국복지국가운동의평가와과제. 복지동향. 194. 13-22.

예: Henry, W. (1990.4). Beyond the melting pot. *Time*. 135. 70-76.

예: “중산층 111 만 가구 줄었다-외환위기이후 대부분 빈곤층전락”. 한국교육신문. (2010.6.8.)

4) 학위논문

예: 김상호 (2003). 한국 빈곤정책과 빈곤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예: Wiebe, M. (1994). Implications of autistic symptomatology for congenital rubella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labama.

5) 인터넷 자료

예: 보건복지부 (2011).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www.mw.go.kr/front_policy/jc/sjc0112 mn.html.

예: “미국 8월 일자리증가 기대이하”. www.hani.co.kr. (2015. 9. 6).

예: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Family Report. www.org/els/social/childwellbeing.

6) 기타 토론회, 학술대회 발표

예: 류정순 (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창립 1주년기념논문집. 28-55. (2002. 10. 12).

예: 구도완, 박치현 (2007). 네덜란드의 지속가능 발전모델: 생태적 근대화와 녹색폴더모델. 한국사회학회사회학대회논문집. 217-233.

예: Corrales, H. & Rodriguez, B. (2004). Transition from education to first significant job in Spain. The 58th International Atlantic Economic Conference. 7-10.

7) 이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사회정책 관례에 따른다.